

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. 8. 23 선고 2018가단202417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청구의
소]

전 문

원 고 A

피고(탈퇴)

피고인수참가인

B

C

변론 종결 2019. 7. 5

판결 선고 2019. 8. 23

주 문

1. 피고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, 강원 양양군 D 대 190㎡ 중 별지 도면 표시 14, 13, 4, 16, 15,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부분 7㎡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단층주택을 철거하고, 위 (나)부분 7㎡를 인도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인수참가인이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18. 9. 3. 강원 양양군 E리(이하 'E리'라 한다) D 대 190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나. 피고(탈퇴)는 1991. 7. 24.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F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 지붕 단층주택 86.42㎡(이하 '이 사건 건물'이라 한다)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.

다.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4, 13, 4, 16, 15,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(나)부분 7㎡[이하 '(나)토지'라 한다]를 침범하고 있다.

라. 피고인수참가인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18. 11. 23. 피고(탈퇴)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증여받아 2018. 11. 26.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.

그에 따라 피고인수참가인은 피고(탈퇴)를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인수하였고, 피고(탈퇴)는 원고의 승낙을 받아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내지 5호증의 각 기재(가지번호 포함),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피고인수참가인은 원고에게, 이 사건 건물 중 (나)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부분을 철거하고, (나)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3. 피고인수참가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1)

가. 취득시효

피고인수참가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.

「피고(탈퇴)는 1991. 1. 31.경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(나)토지를 점유한 이후 20년 이상 그 점유를 계속하였으므로, 2011. 1. 31.경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하였다.」

그러나 피고인수참가인의 주장에 따르면,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(탈퇴)이지 피고인수참가인이 아니고, 설령 피고인수참가인이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취득시효완성 이후 이 사건 토지의 소유 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그 취득시효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다. 따라서 피고인수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나. 권리남용

피고인수참가인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.

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,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을 경우이어야 하고,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,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(대법원 2008. 9. 25. 선고 2007다5397 판결 등 참조).

기초사실 및 기초사실에서 언급한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(나)토지의 위치와 면적,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, 원고의 이 사건 2)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,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(대법원 1995. 3. 28.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).

건 청구가 오로지 피고인수참가인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을 뿐 원고에게

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고,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 된다고 볼 수도 없다.
따라서 피고인수참가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.

4. 결론

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.

판사 양성욱

1)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피고(탈퇴)의 주장을 피고인수참가인도 그대로 원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.